

제16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**

2013. 03. 25.

**복지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의안 번호	1032
----------	------

2013. 03. 25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03. 08. 광진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 03. 08.
- 다. 상정일자 : 2013. 03. 21.

2. 제안설명

- 가. 제안설명자 : 광진구청장
- 나. 개정이유

「영유아 보육법」과 불일치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
 - 보육시설 → 어린이집
 - 보육시설종사자 → 보육교직원
 - 시설장 → 원장, 종사자 → 직원
- 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정비 (안 제5조)
- 3)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함(안 제 16조)
- 4)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- 5)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개정 내용은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, 조례 제2조에서 부칙까지 조문 전반의 내용(용어)중
 - 보육시설(시설)을 → 어린이집으로 하고,
 - 보육시설종사자를 → 보육교직원으로,
 - 보육시설의 장(시설의 장, 시설장)은 → 원장으로,
 - 종사자는 →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였으며
-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6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중 구의원을 삭제하고,
- 조례 제6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3호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, 제5호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, 제7호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의 해당 조문의 개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의 이유로 삭제하였으며,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【별표8의2】 1호 다항의 위탁기간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6조 제1항의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**3년**에서 **5년**으로 변경하고

- 조례 제16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복지관 위탁심의 시에 병행하여 심의하고 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,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으며,
-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에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**【별표8의2】** 1호 다항의 시행일(2012. 2. 5.)이후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소급 적용한다고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위탁기간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.

※ 관련법령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【별표8의2】	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관련)	
1. 일반기준	
가.~나. <생략>	
다. <u>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</u>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	

※ 서울시 자치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현황 (2013년 2월 현재)

개 정 (14개 區)	종로구, 중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송파구
미개정 (11개 區)	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 , 도봉구, 마포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강동구

-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운용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부합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 론

- 반대토론 : 없음
- 찬성토론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